



# 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666호 2010. 11. 8. (월)

공 고	
-----	--

- 공고 제2010-760호 [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]....2
- 공고 제2010-761호 [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].....4

## 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
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알림마당 → 북구 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0-760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0년 11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「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해고사항에 대한 미흡부분을 수정·보완함으로써 환경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,집행예산,복무규정 등을 감안 광역의 울산시 전역 거주자 대상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거주자로서 수정 보완(안 제5조)
- 나. 채용기준의 불필요한 사항 삭제(안 제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)
- 다. 그 밖에 신규채용에 필요한 조건 및 사항을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신설(안 제5조제1항제7호)
- 라.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해고등의 사항은 기관장의 책임과 결정이 수반되는 고유권한사항인 바, 별도 간부공무원의 심의의 결과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(안 제6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환경미화과장, 전화 : 219-7382 팩스 : 219-739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복무규칙」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##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0-761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1월 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「울산광역시복구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「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

#### 2. 주요내용

- 제1조     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,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.
- 제2조      급식, 급식체험프로그램, 급식경비, 친환경·생태친화적 식재료, 급식지원센터, 무상급식, 친환경표준식단에 대한 정의
- 제3조      무상급식 확대, 급식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자치단체의 임무
- 제4조     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
- 제5조      친환경·생태친화적식재료 우선 사용 및 지원, 현금 지원 또는 급식지원센터 지원 방법

- 제6조,7조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
- 제8조 구청장은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,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
- 제9·10·11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기능
- 제12·13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
- 제14조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, 생산농가와 계약재배, 학교와 구매 협약,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
- 제15조 급식경비 지원 내역,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·감독 및 정보 공개사항 규정
- 부칙제1·2조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고, 이전 조례는 폐지함
- 부칙제3조 경과조치 부분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농수산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유통축산 담당(전화 052-219-7673, FAX 052-219-767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